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6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김상훈·강대식·김소희

김선교 • 서명옥 • 고동진

박충권 • 이달희 • 박수영

권영진 · 신동욱 · 이헌승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 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8조 및 제30조 등).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를 "같이 하되,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의 기간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년에 더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다만, 다자녀를 둔 사람의 연령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녀가 2명인 사람: 61세
- 2. 자녀가 3명인 사람: 62세
- 3. 자녀가 4명 이상인 사람: 63세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 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 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 2. 군의과 · 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대위 이하의 장교 및 상사 이하의 부사관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제8조제2항 단서"를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의2제3항 중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 제8조(현역정년) ① -----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 ----같이 하되, 다자녀를 둔 군 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 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 인의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 다. 우 1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 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 년의 기간을 각각 다음 각 호 의 정년에 더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 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 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 과 · 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교수등과 군의과 회의과 만, 다자녀를 둔 사람의 연령정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

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 사

가. 대령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 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 무 중 나목에 따라 제1 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 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 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 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 한다.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사이

나. 중령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사이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사이

- 자녀가 2명인 사람: 61세
 자녀가 3명인 사람: 62세
 자녀가 4명 이상인 사람: 63
 - 세

- 2.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증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 <u>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u> <u>이</u>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수등 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 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 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 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 산

가. 대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 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 무 중 나목에 따라 제1 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 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 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

<u>③</u>·<u>④</u> (생 략)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 <u>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u> 한다.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사이

<u>나. 중령</u>

-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사이
-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사이
- 2.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u>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u> 이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6</u>	 	<u>제5</u>	항	 	

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 팀 정법률 경

제30조(특별진급) ① ~ ③ (생략)

<신 설>

④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지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말의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수등의

·.
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
정법률
제30조(특별진급)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대위 이하의 장교 및 상사
이하의 부사관으로서 3명 이상
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해
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절차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u>수 있다</u>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제3항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② (생략)

- 제53조의2(명예전역) ①·② (생략)
 -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지급액을 정한다.

④ ~ ⑥ (생 략)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u>제8조제3</u>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명예전역)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	_
<u> </u>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
임)제8조제4	
· · · · · · · · · · · · · · · · · · ·	<u>t</u>
<u>하</u>	-
	-
	-
	-
	_